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63

발의연월일: 2024. 10. 17.

발 의 자: 송언석 · 신성범 · 서지영

구자근 • 최은석 • 김위상

박수영 • 박준태 • 강대식

김석기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 한도가 낮고 반복 부과도 어려워 기업들의 자료제출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며, 실제로 외국에 본사가 소재한 다국적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담하고 수백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효성 있는 협력의무 이행 확보방안으로, 납세자가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세청장이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일당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의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만, 평균수입금액을 사용함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1일당 1천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의7제1항).
- 나. 국세청장이 장부등의 재제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과 불이행의 정도·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의7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 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제8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7(이행강제금)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7에 따른 협력의무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질문·조사 등 직무집행에 성실하게 협력하거나 장부등을 제출하도록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제출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입금액 과소신고 또는 조세회피를 위한 해외로의 소득 이전 등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을 사용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일당 1천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 등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 2.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② 국세청장은 장부등의 재제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과 불이행의 정도·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 과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과 제2항에 따른 감경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적용례) 제8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 등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 제55조(불복) ① -----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 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이 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 과처분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5조의7(이행강제금) ① 국세청 장은 제81조의17에 따른 협력의 무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질 문・조사 등 직무집행에 성실하 게 협력하거나 장부등을 제출하 도록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제출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 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 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입금액 과소신고 또는 조세회피를 위한 해외로의 소득 이전 등으로 인하 여 수입금액을 사용함이 적합하 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1일당 1천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 등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기피한 자
- 2.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② 국세청장은 장부등의 재제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과 불이행의 정도·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 강제금 부과금액을 2분의 1의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과 제2 항에 따른 감경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